

96400 편익시설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절은 공공의 편익제공을 위한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 이와 유사한 편익시설에 적용한다.
2. (시방작성자는 이절에 서술되지 않은 개개의 편익시설물에 대한 시방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절을 기본체계로 하여 발주시방을 수정 또는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편익시설 재료
2. 편익시설 설치시공

1.2 관련 시방절(SECTION)

- 1.2.1 22200 터파기
- 1.2.2 24200 되메우기
- 1.2.3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 1.2.4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 1.2.5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1.2.6 97100 목재시설
- 1.2.7 97200 철재시설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해당규격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3.2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13장 옥외 장치물의 제1절 일반사항 및 제4절 편익시설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방작성자는 편익시설 작업시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 받아야 하며 필요없는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시공상세도면 항목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목록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 석재류:
2. 목재류:
3. 철재류:
4. 기타류:

1.4.3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6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목록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편익시설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자격기준 및 경력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자격사항이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5.2 시험시공

편익시설 작업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험시공항목, 시공량 및 횟수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시험시공이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편익시설 공사에 사용될 재료중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등)을 받아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눈, 비,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망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1.7.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1.7.2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편익시설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편익시설 공사전에 반드시 급·배수, 전기, 전화관로공사 및 포장공사의 작업과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 절에 따라 사전에 협력 조정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편익시설재료

1. 석재재료

별도의 발주설계도 또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2. 목재재료

『97100 목재시설』 절의 " 2.1.1 목재" 및 "2.2 마감" 에 따른다.

3. 철재재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 이어야 한다.

4. 비철금속재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 이어야 한다.

5. 기타재료

별도 발주설계도 및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허용차

(자재에 대한 허용차 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르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3.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2.3.3 수급인은 공장에서 가공·제작하는 편익시설인 경우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장 가공·제작 내용에 대하여 공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가공 및 제작

1. 편익시설이 목재 또는 철재로 가공제작하여야 하는 경우 "97100 목재시설" 과 『97200 철재시설』 절에 따른다.

2. 편익시설이 석재로 가공제작하여야 할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편익시설이 기타재료로 가공제작하여야 할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4. 편익시설이 기성제품일 경우는 제조업체의 제작 또는 조립사양에 따른다.

3.1.2 설치시공

1.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절에 따른다.
2.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휴게시설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한다. (특별한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시공에 대한 허용오차 사항 있을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르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3.3 현장품질관리

- 3.3.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